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
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연구용원자로 등 대전지역에 소재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지역사무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(6급 2명)을 증원하고 본부인력 1명(5급 1명)을 대전지역사무소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「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0. 0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 단서 중 “한빛원전지역사무소”를 “대전지역사무소”로, “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, 핵연료주기시설”을 “핵연료주기시설”로 한다.

제7조의3의 제목 “(고리·월성·한빛·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)”을 “(고리원전·월성원전·한빛원전·한울원전·대전지역사무소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”을 “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 총계 “124”를 “12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23”을 “122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간호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 “40”을 “39”로 한다.

별표 2 총계 및 일반직 계 “34”를 각각 “37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

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 “17”을 “18”로 하며, 행정주사·통계주사·감사주사·공업주사·농업주사·해양수산주사·기상주사·보건주사·환경주사·항공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·전산주사·방송통신주사 또는 연구사 “10”을 “12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소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	
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	
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	
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	
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	
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	
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	
관으로 보하며, <u>한울원전지역사</u>	<u>한울원전지역사</u>
<u>무소장</u> 은 행정사무관·통계사	<u>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</u>
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	
·해양수산물사무관·기상사무관	
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	
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	
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	
신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	
다. 다만, 고리원전지역사무소	
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	
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3항에	
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·운영	
하는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	
술서기관으로, 한울원전지역사	
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	
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 서기	
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	
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	
사무관·해양수산물사무관·기상	

신·구정원대비표

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8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124	123	-1
일반직 계	123	122	-1
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간호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	40	39	-1

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.	
---	--

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2]

지역사무소 공무원 정원표(제9조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총계	<u>34</u>	<u>37</u>	+3
일반직 계	<u>34</u>	<u>37</u>	+3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 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 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 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 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 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	<u>17</u>	<u>18</u>	+1
행정주사·통계주사·감사주사 ·공업주사·농업주사·해양수 산주사·기상주사·보건주사· 환경주사·항공주사·시설주사 ·방재안전주사·전산주사·방 송통신주사 또는 연구사	<u>10</u>	<u>12</u>	+2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법제팀	
연 락 처	(02) 397 - 7248